##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6

발의연월일: 2020. 7. 29.

발 의 자:서동용・김회재・인재근

남인순 • 윤영덕 • 김정호

양이원영 · 신정훈 · 황운하

윤재갑 · 민홍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한편 지방대학은 지역의 인재와 지역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학과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 촉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관련 기관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선정 · 운영하여 기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발굴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부터 제25조까 지 신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6장(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구

-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 전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 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 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에 따라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이하"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 3. 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 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 5.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하다.
- ④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특화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위원회) ① 특화지역계획의 승 인,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 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고등교육 전문가 및 그 밖에 고등특화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한다.
  -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협업체계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 제25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 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특화지역의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특화지역계획·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
	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u> &lt;신 설&gt;</u>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구
<u> &lt;신 설&gt;</u>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지
	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
	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
	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 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 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u> <u>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u>

<신 설>

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에 따라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 3. 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 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 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 5.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 회의 장의 신청으로 특화지역

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①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 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 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 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특화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신 설>

- <u>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u> 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 정관리위원회) ① 특화지역계 획의 승인, 특화지역 지정·변 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 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혁 신특화지역지정관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고등교육 전문가 및 그 밖에 고등특화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신 설>

<신 설>

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 정의 효과 등)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 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 는 협업체계 전담기관에 참여 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제25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 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 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 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 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 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 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 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 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 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특화 지역의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 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의 적 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 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 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특 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계획·특

<u>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에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